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4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1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2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2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36.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37. 국방반도체 육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상정된 안건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3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3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3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4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4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4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4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4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4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4
1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4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4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1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4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4
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4
2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4
2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4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4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4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4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4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4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4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4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4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4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4
36.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15
37. 국방반도체 육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4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녹화중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1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2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2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2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3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4시04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23일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희 의원, 황명선 의원 등 7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병대의 주임무를 해군과 분리하여 독립된 규정으로 명시하면서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고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의원과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초급간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대출이자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의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회 제출 및 공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선희 의원 등 5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면서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부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 소위원장님, 연금법 개정안은 어제 논의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부승찬 위원 행정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연금법 개정안을 어제 논의했는데 왜 설명이 안 됐냐 이거지.

○한기호 위원 어제 연금법 개정안 논의를 했잖아요. 논의해서 의결했는데……

○위원장 성일종 수석님, 연금법 개정안…… 지금 알려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논의된 내용 중에……

○위원장 성일종 포함되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내용을 줄여 가다 보니 지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승찬 위원 다 넣은 것 아닙니다. 서른 몇 건인데요 다 넣은 게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그래도 소위원회 위원이 발의안 법을 통과시키면서 소위원장이 보고서 아예 빼버리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잘 살피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잘 살피겠대요.

○한기호 위원 그것 과하지 않으시나요, 소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소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쓴 법안은……

○한기호 위원 여기에 법안은 있는데 실제로 보고할 때 보고는 안 하셨어요.

○부승찬 위원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소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신 법안은 더더욱 꼭 말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선 위원님.

○황명선 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연번 24번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해서 어제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아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위상,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이라고 하는 고유임무 모두가 삭제돼 있습니다. 해병대를 단순 상륙작전부대로 격하시킨 안으로 준 4군 체제 확립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라는 것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에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 중동전쟁에서 일본 주둔 미해병대가 즉각 전쟁에 투입된 사례는 해병대가 단순한 상륙부대를 넘어서서 언제든지 필요한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기능함을 방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병대가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담 부대로서의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고유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위상은 1959년도 해병1사단 창설 당시 대통령령으로 공식화했으며 1965년 파월해병 2여단 결단식 대통령 훈시에서도 재확인됐습니다. 이는 국가 위기 시 가장 먼저 출동하여서 국가 방위와 국익 수호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는 해병대의 본질적 임무를 가장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신속대응작전은 1976년 진해 신속대응중대 창설을 시작으로 50여 년간 이어 온 임무입니다. 최초 중대급에서 현재 2개 여단급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태풍 매미·힌남노 대응, 세월호 탐색작전 등 수많은……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황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략도서방위작전 또한 70여 년간 해병대가 수행해 온 고유임무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우를 잃는 희생 속에서도 백령도·연평도부터 제주도까지, 서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전략도서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이는 정부부처에서도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임무는 새롭게 창안된 것이 아니라 해병대가 반세기 이상 수행해 온 전통적 임무이자 각종 정부 기획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온 해병대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준 4군 체제 개편의 핵심은 이러한 해병대 고유임무를 법제화함으로써 해병대가 국가 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소위 안은 이 핵심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현재 상태로 처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장께서 본 법안을 소위로 재송부하여 충분한 추가 논의와 보완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 3항과 79조의2 3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김병주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주호영 의원, 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및 제10항 김태선 의원, 강선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1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추미애 의원,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홍기원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부터 25항까지 백선희 의원, 황명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6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소위로 재송부해서 충분히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까 그 말씀하신 거지요?

○**황명선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방망이를 지금 쳤는데 황명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듣고 또 황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으시다고 하면 잠시 의결 사항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어제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총 시간이 아마 2시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군조직법에 지금 명시한 법을 보시면 거기에 수행하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안 했기 때문에 육해공군, 그래서 해병대도 별도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넣음으로 해서, 네 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특수작전, 도서방어작전 그다음에 기동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군도 임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조직법에다 넣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검토를 한 건데, 제가 봐서 이걸 다시…… 오늘도 해병대사령관을 만났습니다만, 법안 발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 법은 통과시키고,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동참모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법은 통과시키고 추가적으로 또 법이 발의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하고 소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이 말씀 좀 하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장님, 어제 이 법안은 통과는 됐지요?

○부승찬 위원 예,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다만 대표발의하신 황명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황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렵게 2시간여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 통과가 된 것을 그대로 존중을 하고 지금 작전범위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황 위원님께서 그 법안을 내일이든 모레든 내 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제일 먼저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바로 소위원회에서 그 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황명선 위원 잠깐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성일종 2분 드리십시오.

○황명선 위원 해병대의 준 4군 체제 독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병대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명쾌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은 해병대가 하고 해양이나 해상 그리고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들은 또 해군들이 합니다. 이 내용들이, 해병대 준 4군 체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내용이거든요. 명쾌하게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한테 줘서 상륙작전을 잘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 4군 체제를 만드는데 어제 논의하시느라고 위원장님하고 한기호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다들 노력하셨지만 이 부분이 여기 법안에 담기지 않는다고 하면 준 4군 체제의 법안 만드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법안을 다시 제가 재발의하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이왕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서 발의가 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좀 보완해서 법안소위원회에서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어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요청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발언하시고 임종득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저도 황명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일단 법안 발의자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자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양작전이 주임무이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불분명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법안이 현장에서 군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해석을 통

해 가지고 누군가가 좀 해 줘야 되는데 법안이 오히려 더 불명확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봐도 신설 조항을 보면 해군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지 상륙작전에 대해서 해병대가 하는 건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의를 더 깊게 해서……

그다음에 또 어쨌든 지금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군의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더 체계 있게 더 깊이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어제 제가 소위위원으로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측에서 이 법안과 관련돼서 입장의 통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개정안 내용에 황명선 위원께서는 4군 체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4군 체제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황명선 위원 아니요, 준 4군 체제예요. 준 4군 체제인데……

○임종득 위원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

지금 국군조직법의 상위 조항에 보면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될 답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작전, 상륙작전만 답자. 왜냐하면 육해공군도 세부적인 작전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만 담은 거고요. 그래도 별도로, 해병대가 3군에 의하면 따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하는 걸로 해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희 위원님께서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헛갈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륙작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 상륙작전을 위해서 해군이, 해상 이동과 관련된 부분부터 상륙지역으로 가는 것까지가 전부 해군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을 할 때 상륙부대의 지휘관으로서 해병대가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도 헛갈리지도 않고 임무에 혼돈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도서방위작전, 기동타격작전 이런 것들을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데 현실적으로 지금 해병대가 서북도서를 방어하고 있잖아요.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해병대의 고유임무하고는 좀 떨어지는 겁니다. 전략적 기동부대로써 운용되기 위해서는 한곳에 모여 있어야 되고 상륙을 위한 준비들을 하도록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 담는 것 자체가 해병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황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 부분을 4군 체제든 준 4군 체제로 가기 위한 법 개정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 연구, 의견 조율을 통해 가지고 4군 체제에 맞는, 위상에 맞는 것대로 고쳐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절차들을 밟아 가지고 이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김병주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군조직법상에 3군 체제로 되어 있다. ‘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 4군 체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 핵심이지요?

○**임종득 위원** 3군 체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4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니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바꿔서 이 법안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임종득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많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일단 절차적으로, 이미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법안소위에는 제가 안 들어갔는데 저는 실제 각군의 임무를 여기 조직법에 구체화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도서방어든 이런 건 사실 편법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이지 실제 해병대의 고유임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획기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건 준 4군 체제인데, 준 4군 체제의 핵심은 사실 여러 가지 권한을 강화하는 건데 그중 가장 큰 것이 합동참모회의에 정식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획기적인 사항이에요. 사실은 해병대 사항이 있을 때만 주로 가는 거거든요. 합동참모의장, 합참의 의무 중 하나가 주요 의사결정기구인데 그동안 해병대가 소외돼 있었거든요. 저도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합동참모회의에 들어가 보면 정식 위원이 아니에요,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를 넣었다는 건 준 4군 체제로 가는 큰길을 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통과된 건 절차상도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지금 황명선 최고위원이 제기한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국방위의 컨센서스가 되어야 되고 국방부도 같이 큰 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통과하고 추가적으로 수정안을 내서 전체적인, 국방부하고 우리 국방위원들이 전체 개념을 잡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정청래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까?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이 또한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온 안 같은 경우도, 법사위를 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 무엇이 발견돼서 정부부처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건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임위로 회부

해 주세요’, 아주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법사위 내에서…… 이런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가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방망이를 한번 쳤기 때문에, 소위로 다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 계류시켜 놓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소위로 다시 가는 것보다는 이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발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서 법사위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내용 가지고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법사위로 보내지 말고 계속심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간사님.

○부승찬 위원 어제 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요.

일차적으로 해군이 모든 작전에 대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존 안을 보면. 국군조직법 3조 2항에 보면 해군이 모든 걸 하게끔 돼 있어요, 편성, 교육·훈련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2조에 걸립니다. 2조에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조에 법률적으로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분리하면 각군의 임무인데 각군이라 함은 해병대까지 4군이 되는 겁니다. 4군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2조에서 해군과 해병대의 주임무를 분리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 법은 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훈련을 전부 해군이 했는데 이제는 해병대가 상륙작전 임무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전략도서방어 임무라든지 신속대응작전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해병대사령관이 편성해서, 그리고 교육·훈련을 하게끔 한 단계 진일보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주임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군은 과연 항공작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히 그냥 작전 하나만 넣을 것인가 이런 논쟁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작전교리나 작전지침, 작계상에서 이걸 전환을 시키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 4군 체제의 모습은 국군조직법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임무에 포커스를 두지만 법사위에서 저희 민주당이나 국힘 입장에서 봤을 때 준 4군 체제에 대한 반대는 없는데 법리적인 문제, 모순점을 갖고 논의가 주로 있었고요. 왜 준 4군 체제냐? 밑의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편성과 교육·훈련을 해병대가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서 하다가. 그런 점을 염두에 뒀고요.

다만 그래도 대표발의하신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결은 했지만 국방위에 계류를 시켜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협의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지금 한기호 위원님이나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준 4군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 지지하시는데 지금 법상 3군 체제하에 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지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법안을 내셨던 황명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통과한 건 그대로……

○**김병주 위원** 가능할 때 의견을 잠깐 들어 보시지요. 여기서 계류해서 앞으로 이걸 또 자구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님의……

○**위원장 성일종**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된 법이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에 체계나 자구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정청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승찬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걸 그대로 두고 추후에 간사님들 두 분이 협의를 하셔서 추가적인 법안이 들어오면 그때 안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백선희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3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군인복지기본법을 비롯한 국방 현안에 대해서 또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방정책에 보다 심도 있게 반영하고 또 우리 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36.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14시39분)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한국-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국권을 상실한 암울한 시기인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려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그의 한국에 대한 헌신은 한국과 캐나다 간 형제애를 형성하는 역사적 출발점이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훈장을 수여받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존경받는 캐나다 인물로서 양국 우호의 역사적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인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약 2만 7000명의 젊은 영웅들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린 바 있고 379명의 캐나다 용사들이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캐나다 용사들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의 가치와 희생을 기반으로 번영을 함께 일군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캐나다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도, 번영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

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온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자유와 규범에 기반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은 무역·투자, 에너지,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 왔으며 AI·모빌리티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동시에 접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와 안보질서의 중심지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최근 한-캐나다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이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안보 정세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의 심화 속에서 형제국 간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안보, 산업, 기술,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항공우주, 지상 무기체계, 정밀 유도무기, 비행기, 미사일 등 다양한 방위산업 첨단전력 제조역량과 적시 납품능력, 체계적인 후속군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국제 방산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또한 방위산업전략을 통해 자국의 안보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연대와 협력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및 원천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양국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과 기술협력 확대, 공급망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 증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서로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에 대한민국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캐나다 간 국방산업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대한민국국회 국방위원회는 규칙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캐나다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방위원회는 캐나다 방위산업 협력의 방향을 고려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및 산업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민국국회 국방위원회는 양국 간의 해상 안보역량 강화를 필두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방산 제조 및 공정 기술과 캐나다가 보유한 핵심 광물자원 및 AI·양자 컴퓨팅 등 첨단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대한민국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외교적·입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민국국회 국방위원회는 캐나다 정부의 방산·국방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지하며 국제무대에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원 위원 대사님, 굿 애프터눈.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렇게 했는데 혹시 들으실 때 조금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점이 추가됐다든지 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어떤 의견이라도 첨부해서 가급적이면 캐나다 정부의 의견도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 국회에 최초로 기록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위원장이 하실 때 혹시 추가로 이런 점이 좀 더 부각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면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조율을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입법조사관 등 실무진들의 수고도 함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의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캐나다 대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전달)

○김병주 위원 발언할 기회 있지요?

○위원장 성일종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주한캐나다대사 필립라포르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장관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결의안 초반에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캐나다대사관에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대사관 내부에 스코필드라는 이름의 홀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인으로서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4월, 70여 명의 캐나다군 대표단과 90세가 이미 넘으신 3명의 참전용사께서 가평전투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우정을 위해서 노력한 증명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한국과 캐나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의안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두 나라는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께서는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군사 및 국방 기밀정보보호협정에도 사인했습니다.

오늘의 이 결의안은 앞으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의안은 앞으로 양국 간의 더 많은 협력 또 나아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왜 캐나다가 오늘 이 결의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때 모든 사람의 만장일치로 채택된다는 것은 입법부에서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희 캐나다 총리이신 마크 카니께서 다보스포럼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지정학적으로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견국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서서 하나로 뭉쳐서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Thank you for speaking, Mr. Ambassador.

잠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승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십시오.

○부승찬 위원 위원장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군협회와 관련…… KADEX와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국회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조건부에는 보안서약서 작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서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해서 4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비밀을 유출하고 영상을 대외로 공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위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협회 홈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계룡대에서, 우리가 육군본부에도 확인했고 국방부에도 확인했는데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에서 KADEX를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KADEX 신청이 마감됐다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국회를 무시하고요, 국방부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다음 장.

분명 KADEX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서 아예 장소를 계룡대 야외 특별전시장으로 꼭 짚어서 승인도 안 된 사항을 이렇게 홍보하고 기업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협회가 KADEX 비상활주로 사용 논란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요. 지상무기 전시회는 육군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국회건 국방부건 가만 있어라 이런 오만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무도함에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될 것을 확정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됐는데, 지상무기 전시회는 육군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적 행사인데 니네가 웬 참견이나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리는데 바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예, 3분만 딱 쓰면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화면을 좀 주십시오.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학사장교 모집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사진의 여군이 모자에는, 베레모에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옷에는 상사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저 옆의 남군은 태극기 마크도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음.

지난번 춘천에서 춘천대첩 행사를 할 때도 저 그림에 Mi-8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밑에 지상군 쪽에는 BTR-80 전차를 넣은 그림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게 외주 정비를 줬다고 그러는데 감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런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하든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이것은 제가 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보여 드립니다.

‘아프다고 하면 다 보내 줘니다. 하루 종일 외진 나가서 핸드폰 하고 한 달에 열두 번도 나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앞으로 군의관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인력난에

시달려야 하고 남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공간력 창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다음.

육군 공간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로 제가 쓴 건데요.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간력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하부대에서는 없는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간부들이 직접 도배, 용접, 페인트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지휘 방침을 따르느라 일부 지휘관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간부들이 사실상 인테리어 인력처럼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것도 받은 문자입니다. 이것도 받은 겁니다.

‘생활관에 어디어디가 아프다고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진은 휴대폰으로 병사들이 신청도 하는데 보고·승인 절차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기본권 침해한다고 제지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문자를 받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제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나온 나형윤 예비역 중사라고 군 복무 중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 기억납니다.

○임종득 위원 기억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장관님께서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별떡 일어나서 직접 가서 가지고…… 두 손이 없어요, 의수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잡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기억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당시에 제가 지침을 내렸습시다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단 한 건도, 단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다시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작년 10월이잖아요. 지금 벌써 3월이면 5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 사건은, 이 사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기억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증인을 채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어요. 국장도 오지도 않고 과장하고 실무자 해 가지고 4명이 왔는데,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작년 국정감사 때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두 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법안 검토한 내용이에요. 하루 저녁에 돌아보면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검토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직접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이든 국장이든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보고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꼬적거리고 와 가지고 사실상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냐고요.

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장애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검토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 문제를, 국가에 헌신하다가 다친 사람이 지금 정부의 잘못에 의해서 억울하게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 개정에서부터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들 다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 일정이 있어서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여기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먼저 오늘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은 성일종 위원장이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캐나다와의 잠수함 수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산 협력, 안보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캐나다 결의안?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도 십여 년 전에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특히 캐나다 잠수함이 지금 상당히 핵심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에 이런 여러 가지 방산 또 안보 협력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저도 작년에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캐나다 가서 방산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방산 수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안질의 시간이 없어서, 국방위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딱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중동전쟁과 관련된 것인데 과연 파병이 어떻게 되느냐에 우리가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공식 정부 입장은 제안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면서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도 그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아직까지 미측으로부터 어떤 레터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물밑에서는 미측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외교부장관은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조금 애매하던데 어떻습니까, 외교부는?

○국방부장관 안규백 외교부 입장이나 국방부 입장이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말의 표현, 단어,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아마 공식적인 포맷(formal)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측과 상호 협의가 없나?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떤 현안……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자산, 미 자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린 것도 일종의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난번에 일본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 미치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미측 실무회담 간의,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은 오늘 특권을 누리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민적 관심사니까……

○위원장 성일종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양당 간사님, 아까 부승찬 간사님께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 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간사님 두 분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장관님,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프다고만 하면 한 달에 열다섯 번도, 한 달도 나갈 수 있다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의사협회하고 조금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의사협회하고 충돌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의사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부에서 빨리 의사협회하고 협의도 하시고 국방부 내에서도 빨리 협의를 하셔서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이 부분이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두르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200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17년 전에도 의사협회에서 이걸 반대해서 국군 의료법이 통과를 못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른 분은 못 하셔도 안규백 장관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두터운 인맥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주무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청회 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쨌든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오늘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국방·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으로 아마 국방위 역사에서 드문 빛나는 기념비적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독일하고 해서 잠수함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또 난형난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캐나다 측에서도 많이 공감을 얻고 또 공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신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오늘 위원님들 여러 법안도 다 통과해 주셨지만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그동안 특수한 관계를 이어 오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위대한 번영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캐나다는 세 번째로 육해공군을 다 파견해 주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다 함께 모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 결의안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캐나다 간의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돼서 양국의 번영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 사항은 외교부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또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측에서도 기업과 또 여러 곳에서 두 나라의 우호를 위해서 오늘의 이 결의안 통과를 많이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모습이 아마 국민들 봤었을 때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양당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일치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전에도 하급장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당직비용에 대해 다른 부처보다 굉장히 저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는 또 소위 특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위원회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통과시켜 드렸고 저희 국방위원회가 더더욱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관계관 여러분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진술인들 들어와 주시고요.

37. 국방반도체 육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5시28분)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37항 국방반도체 육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경 LIG넥스원 전무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운성 광운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옥 디에스전자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석준 한화시스템 전무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오늘 공청회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등 관계자들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하시고 정부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한 담당자들에게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분의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도경 LIG넥스원 전무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에 들어가니까요.

○진술인 김도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넥스원에서 C5ISR연구개발본부를 맡고 있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법률안의 진술인으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뜻깊은 법률안 발의에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반도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기체계는 정밀 유도, 네트워크 중심전, 인공지능 기반 표적 인식, 자율 운용, 전자전 대응능력 및 레이더 센서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 방위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는 고성능·고신뢰성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무기체계의 연산능력, 센서 성능, 통신 품질 등을 좌우하는 요소로 체계 성능과 작전 신뢰성, 보안성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입니다. 나아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의 개발·생산 경쟁력이 미래 군사력 수준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첨단공정 접근 제한 및 수출 통제 확대는 국방 분야에서 안정적 반도체 확보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반도체는 소량 다품종, 장기 운용, 고신뢰성 요구 특성으로 민간시장 중심 투자 유인이 제한되는 영역이면서 국가안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분야로 정책적 육성 필요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22년 미국의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 시행 후 국가별 반도체 공급망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일 거고요. 중국의 사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무기체계 개발 관점에서의 국방반도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체계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국방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계 신뢰성과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운용체계 유지 및 정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자립화가 필요한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입 부품 적용 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로는 무기체계 시스템 수출 시 대상 국가에 따른 부품 E/L 적용으로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수출 통제로 인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 도입 불가 시에 무기체계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불 보듯 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공급망 차질 시 부품 단가 상승 및 개발 지연이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시에 다수의 해외 부품사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부품들의 입고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사에서도 자주포 사격지휘체계, FM무전기,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등 다수 사업에서 도입품 입고 지연으로 최장 2년까지 납기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해외 의존 구조가 체계업체의 일정, 비용 부담 증가뿐 아니라 사업 수행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반도체 국내 개발 현황 및 이슈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반도체, FPGA 및 AI 반도체 등은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화합물 반도체 및 RF 반도체의 경우 국내 산학연을 통해 설계는 수행하고 있으나 제조 공정은 역시 거의 해외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반도체 공정 및 패키징 관련해서도 소량 다품종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및 패키징업체의 개발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고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부품 신뢰성 검증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법률안 추진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와 더불어 전력화 지연 및 운용 공백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겠습니다. 핵심기술 자립 기반 확보 및 산업 생태계 형성이 가능하고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기대됩니다.

저희 업체의 체계업체 또 수요기업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했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법률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국내 개발 부품을 적용했을 때 체계업체의 애로사항 관련된 부분도 12조, 13조에 잘 반영이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의 항목들도 각 조에 내용이 잘 반영이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드리고 진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방반도체는 첨단 유도무기, 감시 정찰, 전자전 체계의 성능 및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며 체계업체 관점에서도 안정적 반도체 확보 여부가 사업 수행 안정성, 일정 준수, 체계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방반도체는 소량 다품종, 장기 운용, 고신뢰성 요구 특성으로 민간시장 중심 공급이 어려운 영역이며 체계업체 단독 대응만으로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기술 축적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해외 의존 구조는 공급망 리스크를 넘어 국방 전력 공백, 수출 제한, 성능 제약 등 복합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반도체는 설계, 제조, 패키징, 검증, 운용을 포함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영역으로 체계업체의 안정적 사업 수행 환경 조성 및 국산 부품 적용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정한 K-방산 구현을 위해서는 반도체 자립화가 요구되며 당사는 국방반도체 관련 법안이 미래 전장 환경 대응능력 확보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산업계,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본 법안을 통해 향후 K-국방반도체가 전 세계로 수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도경 전무님 너무너무 시간까지, 알찬 내용으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윤성 광운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어윤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운대학교 반도체시스템 공학부 교수 어윤성입니다.

먼저 반도체 하는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회에 와서 국방반도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고 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도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방반도체라고 하면 사실 민간반도체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기체계, 군수 제품으로서 적용이나 또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국방반도체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기체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 및 특히 요즘 반도체 패권 전쟁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구요.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특정 분야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국방반도체 유형을 만들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RF나 화합물 반도체들도 있고요. 동시에 로직이나 프로세서들 또 AI 반도체—물론 요즘 관심을 받는—그다음에 범용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전원, 센서, 구동 반도체 해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들이 그 각각의 요소들로 하나의 무기의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유형마다 기술의 특징이나 전략들이 다 다릅니다. 생태계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하나 국방반도체, 이렇게 하나의 탭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고르게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사실 그림을 제가 그린 게 하나 있는데 반도체는 그것들이 어떤 모듈이나 구성품으로 들어가서 전체 무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소량으로 다품종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굉장히 중복성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작은 것 같지만 은근히 규모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특별히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군통신, 레이더나 유도무기, 첨단 센서 등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특별히 미래의 무기가 첨단화되고 고도화되고 특히 요즘은 AI 기반의 드론, 로봇, 유무인체계들로 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형화되고 저전력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상무부 산업안보국 자료들을 조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다, 이 시장을 전략적으로 잘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8.9%라는 해외 의존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방사청하고 같이 조사했던 사람이기는 한데요. 이 숫자에 대한 디테일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들이 단가 상승, 여러 가지 문제로 위험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반도체들이 수급 불안정 시 상당히 생산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해외 동향 및 이슈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CHIPS법을 통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FAB 쪽이나 제조 쪽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는 데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미국은 ADI, TI 등 1위 업체들을 대부분 각 분야별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아주 정책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공정부터 설계 모든 것을 다 구축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동향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방산반도체는 주인이 사실은 정

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도 많은 자율권을 줘야겠지만 정부가 중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국내 국방반도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80~90년대부터 오랫동안 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별로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의 부품으로서 취급을 받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 와서 결국에는 98.9%가 해외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거나 또 새로운 AI 반도체, 프로세서 반도체 이쪽은 역량이 되게 약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FPGA 같은 분야는 과도하게 의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두뇌거든요. 애가 사실은 모든 무기체계의 두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제들이 체계 중심 개발인데 이것에 있어서 반도체에 맞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사실 전담기관이 있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전담기관을 가지고 거기에 유능한 인력들을 많이 뽑으셔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중심을 잡아서 전 유형별로 다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서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허송세월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저희가 본 바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 저도 이것으로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추진위원회를 통한 실태조사, 현황조사들이 있어서 추진전략이 잘 수립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전담조직 말씀을 드렸는데 19조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전담조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을 통해서 사업기획, 관리, 신뢰성 전 분야에서 산학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분야의 유능한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요. 11조 4항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인센티브, 우선구매, 계약·협약 특례들로 기업들이나 참여자들에 한해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어서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펍리스 그림으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국내 민간 펍리스를 조사한 겁니다. 보시면 로직이나 이쪽은 상당히 기업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잘 유입만 될 수 있으면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어윤성 교수님도 그 많은 양을 아주 함축해서 정말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준범 국장님하고 또 윤창문 국장님 두 분, 와 계신 전문가분들 말씀하실 때 전담조직이나 이런 것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구상을 하셨어요? 전담조직 같은 것 꾸릴 구상을 다 하셨어요? 하고 계세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입니다.

현재 국방기술연구소에 반도체 전문인력 5명 정도 확보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행하다가 혹시 빠뜨릴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입법 사항에 여러 가지 넣을 것도 얘기를 하시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기만큼 더 훌륭한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방금 어 교수님 말씀은 전담조직을 뒤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러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조직하는 데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할 때 이미 뒤에 계신 국장님들 머릿속에 이 법안을 보면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 준비하고 계셨냐 이거예요. 법안이 통과된 다음 하면 늦어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일부 준비된 것도 있고 말씀을 반영해서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는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디에스전자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병옥 안녕하십니까? 디에스전자 임병옥 대표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화합물 반도체 개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가연구소, 방산 대기업 등을 거쳐서 국방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인 디에스전자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약 25년간 화합물 반도체 관련된 산업군에 종사하면서 느낀 바대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aN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반도체로서 국가안보,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된 전략기술로 우리나라와 같이 20~30년 이상 무기체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국산화가 꼭 필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90% 이상 해외에서 공급되는 반도체는 급작스러운 단종 그리고 수입 불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기체계의 유지·보수가 안 되어 해당 체계의 운용이 불가하여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GaN 반도체와 같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기술이라 생각됩니다.

GaN 반도체 같은 화합물 반도체가 국산화돼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aN 반도체는 현대 전장에서 무기체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으로서 고출력·고효율 성능을 통해 레이더의 탐지거리 확대, 다중표적 추적, 전자전 대응능력 강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기술로서 실제 전장에서 생존성과 연계가 됩니다. 그 외에도 위성통신, 전파 교란 등과 같은 전자전, 미사일 표적 정밀 탐지를 위한 탐색기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방산용 화합물 반도체는 대부분 미국, 유럽 등 해외 제품 또는 해외

제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다양한 수출입 통제, EAR이라든가 ITAR 등을 통해서 국방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방반도체의 수급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일방적인 단종, 공급망 병목, 가격 변동성 등은 저희 국방반도체 분야가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결국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산업 특성상 반도체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최근의 국제분쟁 상황 속에서 그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 법안을 보면, 국방과 화합물 반도체를 업으로 하는 저로서는 국방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향후 국방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GaN 반도체 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국방반도체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국방부(DoD)와 DARPA 등이 주도해서 GaN 반도체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방위청(EDA) 주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단일 기업이 아닌 범유럽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2개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대기업들이 현재 국방반도체와 같은 중요한 반도체의 가장 톱티어 군에 속해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5조에서 8조에 나오는 3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는 정책 일관성과 공급망 위기 시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서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10조에 있는 연구개발 지원과 비용 절감 등에…… 법안은 연구개발 지원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고위험 R&D 부담 완화를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는 민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국방반도체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조에서 13조에 있는 부분에서는 시장 창출 및 초기 매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시험과 인증, 계약 등 기업의 시장 진입에서 충분히 다양한 것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조의 전문기업 육성 및 인프라 지원 부분에서는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기업 등 국방 분야에 진출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반도체는 전략기술로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법으로 보호될 수 있고 또한 국방반도체가 개발됐을 때 이것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법안들은 팹리스, 설계 기업과 그리고 제조, 파운드리 기업 등 국방반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결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GaN 반도체 등 국방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안보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8.9%라는 퍼센트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는 저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방반도체가 아직도 해외 의존도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특히 필요한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성공적인 모델을 봤듯이 강력한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정부 컨트롤타워가 명확한 비전과 시행력을 갖추고 산·학·연·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자립화를 완성한 전략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병욱 대표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시스템의 홍석준 전무님께서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홍석준 감사합니다.

저는 한화시스템의 홍석준 전무입니다.

먼저 이런 국방반도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산에서 한 30년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반도체, 특히 국방반도체는 화합물 반도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개발을 하면서 부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2008년에 이스라엘하고 경쟁할 때, 엘빗하고 경쟁할 때인데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화합물 반도체를 저희가 가져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개발을 끝내고 어느 정도 전력화 갈 수 있는 시점에 있는 부근에 일본 미쓰비시에서 반도체를 E/L로 걸어서 저희한테 수급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면 저희가 따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얘기할 때 이게 산업용으로 쓰이는 줄 알았지 방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라 했었고요. 저희가 오더를 넣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방산이라고 써 붙였었고 당연히 저희 회사 자체가 방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있어서 상당한 낭패를 봤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40%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OMMIC가 MACOM이라는 회사로 M&A 합병이 되면서, 애네가 정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 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국방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품을 함부로 쉽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사오십 % 정도의 원가를 상승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성통신, 특히 군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반도체가 되게 중요한 게 애가 얼마나 성능을 내느냐에 따라서 군 작전반경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방반도체 법률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방반도체를 수입해서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수입품이 거의 98.9%입니다. 거의 99%가 대부분 미국하고 유럽에서 수입합니다. 미국에서 애를 막으면 저희가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수입이 안 되면 다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그래도 방산 쪽의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걸 제조·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조, 파운드리 이쪽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설계에 대한, R&D에 대한 부분은 많이 써 있는데요 제조 쪽의 파운드리에도 관심을 갖고 보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고시피 이러한 부품들이 수급이 안 되면, ITAR나 E/L로 제한이 돼서 저희가 수급을 못 하면 첫 번째, 군 전력화에 차질이 상당히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군 무기가 도입이 되면 30년, 50년 쓰지 않습니까? 삼사십 년 쓰면 유지·보수해야 됩니다. MRO를 해야 되는데 MRO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네들이 팔다가 중간에 5년, 10년 전에 단종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이 부품을 바꿔서 개비(改備)해야 됩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화 공백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특히 선진국에서 저희한테 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최고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 칩은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통 2순위·3순위를 팔거든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체계들,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성능을 미국 애들보다 더, 선진국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게 저희 엔지니어들이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더 좋은 반도체 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네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높여 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첨단 방산체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 4대 강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나서 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방산업체로서 정부에 기여하고 또 국가와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방산을 정부가 또한 국가가 키워 줬지만 지금부터는 그래도 수출하고 거기에 이익이 나서 국가와 민족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반도체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이 법안을 다 보았습니다. 다 좋고요, 단지 방산물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 안에는 없지만 시행령에 부품에 대해서 방산물자 지정이라는 부분이 좀 있으면, 특히 반도체라는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투자가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투자도 발행되고요. 반도체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수급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

면 이러한 부분들이 방산물자로 지정돼서 저희가 원활하게 정부하고, 특히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데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군과 정부에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홍석준 전무님, 아주 귀한 말씀 주셨고 방산물자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더 넣어 주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술인 홍석준 예.

○위원장 성일종 저기 뒤에 전준범 국장님, 방산물자 지정이라고 하는, 지금 홍 전무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말 귀한 네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에 오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법안에 넣고자 발언을 다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주질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간사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시간은 5분 내에서 핵심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대신 뒤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도록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짧은 시간에 방대한 것을 요약한다고 했겠지만 다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윤성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반도체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LIG넥스원의 본부장이신 김도경 본부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메모리, 전원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충분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기체계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어윤성 맞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FPGA 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분석해 놓은 표를 잘 보시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반도체 조달 현황표를 한번 보시면,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율이 거의 99%에 이르고 있는 이 상황을 홍석준 전무께서 조금 전에 부연 설명이 있었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어윤성 일단 저는 반도체를 한 17~18년 개발을 해 왔고요. 사실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런데 체계 업체에서는 톱다운으로 보시고요 저는 바텀업으로 봅니다.

저 표는 사실 방위사업청하고 제가 같이 조사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RF 쪽하고 고출력 화합물은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은 제가 안 하겠고.

그런데 그것 외에도 사실 머리 역할을 하는 FPGA 같은 경우, 좀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특정 나라, 특정 업체 하나에 거의 의존합니다. 그게 개발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프로그래밍하고요. 그것도 좋은 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수급 불안정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돼서, 이것도 사실 수출입 품목이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의 다른 반도체들도 메모리도 안 쓰고 또 MCU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걸 하려면 소프트웨어 환경이나, 개발하는 게 반도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각 유형별로 다 꼭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분야별로 그것들을 숙지하시고 왜 안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환경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그래서 기존 이미 국산화된 민간 반도체를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상당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전원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기술력이 없어서…… 99%라는 건 반도체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노력하면 한 이삼십 %까지 낼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각 유형별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대식 위원 홍석준 전무님, 국방반도체 수급이 만약에 제한될 경우에 어떤 파급적인 영향이 미칩니까?

○진술인 홍석준 심플하게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미-이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뉴스에 저희 천궁이 96%의 요격률을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의 제일 핵심이 레이더지 않습니까. 레이더가 탐지해서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를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칩이 다 수입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현재 정부하고 같이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에 대부분 다 대만이나 미국에서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파운드리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덜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략물자 E/L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끊어 버리면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현재 첨단 방산무기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인화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무인화로 가면 그 무인화 장비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다 화합물 반도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GaN 소재나 갈륨비소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주국방의 자주, 반도체 소버린(sovverign)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강대식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강대식 위원 김도경 전무님, 만약에 기업 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정부 지원이 필요할까요? 좀 전에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진술인 김도경 애초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국방반도체 분야가 경제성을 확보

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업체 하나가 나서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방사청의 인공지능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를 국산화 목표로 하고 있고 반도체법 제정이 목표 달성의 어떤 데에 필수적인 전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장 노용준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장 노용준 서기관입니다.

현재 98.9%라고 하는 통계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많이 도전적으로 잡아서 최종적으로 50%까지는 국산 반도체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진술인들이 말씀해 주신 설계부터 파운드리, 제조까지 모든 게 다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 되고 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GaN과 같은 국방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해외에 의존하잖아요, 전부.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능력은 갖고 있는데 수익성 창출이 안 되는 겁니까? 뭘니까, 대체?

○진술인 어윤성 일부 갖고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합물만 얘기되지만 실리콘 반도체가 엄청 많거든요. RF 외에는 다 실리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삼성이나 동부 FAB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쓰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부승찬 위원 방법의 문제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예요?

○진술인 어윤성 예, 저는 기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서로 안 맞고 하니까……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진술인 어윤성 예, 그런 문제가……

○부승찬 위원 이것을 만들어 봐야, 공장을 짓고 파운드리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걸 생산해 봐야 이익이 안 남는데 누가 투자를 하냐, 여기에 어떤 전문인력들을 갖다 놓느냐 이 문제 아니예요, 중국적으로는?

○진술인 어윤성 그런 문제가 많이 영켜 있는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정을 지원을 한다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교수님 생각에는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어윤성 예, 그 기업에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술력 가진 데가 민간에 있거든요. 그 업체들은 자기 회사의 기회를 민간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국방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을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되고 지속성 같은 것도 해 주면 할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부승찬 위원 지금 보면 천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모든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가 들어가고 거의 해외 의존도가 98.9%, 99%로 간다면 결국은…… 지금 주 수입원이 미국과 대만입니까?

○진술인 홍석준 거의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승찬 위원 미국.

○진술인 어윤성 유럽도 좀 있습니다.

○진술인 홍석준 유럽도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반도체를 만드는 데, 우리의 주요 핵심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국방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미국이 가장 높고—우리 의존도가—그다음 유럽이고, 대만에서도 수입을 합니까?

○진술인 어윤성 대만은 완제품이 아니고요. Fab을 주로 해서 미국도 대만에 종속돼 있습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최종 업체는 미국이 많고요.

○부승찬 위원 아, 그래요.

○진술인 어윤성 예, ADI, TI 이런 데들은 다 미국 업체인데요. 개네들도 Fab 자체도 있지만 사실 대만 Fab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승찬 위원 저는 진짜 반도체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잘 모르는데 상당히 심각한 위기 수준이라는 생각이, 교수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걸 그냥 확 느끼거든요.

○진술인 어윤성 그래서 미국도 그거를 위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 국방반도체법, 지금 제정하고 있는 반도체법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 네 분의 전문가님들은 ‘이거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는 이렇고 기대는 이 정도 된다 여기에 불과하거든요. 산업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까?

국방반도체법이 제정돼서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요소들은 법 조문에 규정을 해 줘야 어느 정도 우리의 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반도체특별법과 미묘하게 대립, 갈등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진술인 어윤성 그렇지는 않은 걸로……

○부승찬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진술인 어윤성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국방반도체법을 보셨으니까 본 내용 중에 이 부분은 꼭 넣어야 된다, 이거 안 넣으면 국방반도체 특별법은 제정하나마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이 이런 조문은 꼭 넣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 말씀 안 해 주실 거예요?

○**진술인 어윤성** 법안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진술인 임병욱**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분들이 열심히 보시고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시급한 것은 이런 법률이 빨리 제정이 돼서 국방산업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위기인가는 벌써 수치로 나와 있고요. 이 법안이 빨리 시행돼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승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하시고 임종득 위원님 이렇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네 분 발표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방반도체법 필요하다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위 경제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 군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속된 표현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또 정부, 군 입장에서 어려울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방사청 쪽인가요? 누가 50%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그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지,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략 몇 조 정도가 필요할 걸로 본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줄 분 혹시 계신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방위사업청 기술개발보호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제가 정리해 보자면 사실 지금 국방반도체의 국산 비율이 낮은 거는 첫 번째가 경제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지금 없지만 대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경제성……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이다 보니까 그 정도 물량을 갖고 국내에서 설계하고 파운드리가 생산하기에는 생산성이 안 맞는 게 제일 큰 게 있고, 아무래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계속 외산에 의존하는 거는 안보 그다음에 기술 축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가장 효과성이 높은 데를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유용원 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추산……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올해는 사실 저희가 국방반도체를 위한 별도 사업이 없지만 기존의 핵심기술 사업을 통해서 올해 한 15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단기간에 한 1000억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설계…… 연간 한 1000억 정도, 설계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까지 해서 대략적으로는 단기간에 그렇게 해서 연간 1000억 정도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업계에 계신 분도 지금 추정에 동의하시나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인 임병옥** 제가 말씀드리면……

○**유용원 위원** 예, 임 대표님.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전문가 네 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애로사항 겪는 걸 여기 다 다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온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런 거 지원하고 저런 거 지원하고 해라. 그래야 뒤에 전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안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위해서…… 지금 기업이 혼자 개발해서는 도저히 이게 수요처가 없고 이렇게 때문에 어렵잖아요.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세요.

○**유용원 위원** 오늘 국방위원장님도 계시고 여야 위원님 계시니까……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 더 넣어 드리세요.

○**유용원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임병옥** 저는 펄리스 기업이고 중소기업이라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던 부분이 12조에 보면 방산물자, 반도체를 사용해 주는 주체가 되는 방사청이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부분들에서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구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정부에서 사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많이 지원될수록 저희 기업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법안에 있는 12조 그 부분이 잘 지켜지면 저희 기업들에게 굉장히, 생태계 순환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임 대표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 한국형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방사청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임병옥** 결국에는 반도체, 특히 국방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소량 다품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산업에 뛰어들기도 힘들고 산업에서 살아남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 주도, 특히 방위사업청이라든가 국방부에서 법안에 대한 힘을 실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3개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경쟁력 있게,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마침 여기 보면 법안 13조에 성실실패 면책 조항이 있기는 한데 사실 업체나 R&D 쪽에 계신 분들이 보면 실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전적인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도경 본부장님,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우리가 국방반도체를 업체에서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위원회 구성이나 심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실제로 업체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보시나요? 좀 더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위원회라든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겠습니까?

○**진술인 김도경** 제가 느껴지기로는 방위사업청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개발을 업체들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사청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체계업체 입장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국방반도체를, 이제 막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체계개발 사업에 적용했을 때의 리스크를 업체가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완전히 확인이 안 된 부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업체가 책임져야 될 무기체계의 성능 입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일정 지연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면책 조항으로 담아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해외 우수업체들보다 떨어진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시장을 만들 수 있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하려면 그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어드밴티지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셔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무엇보다도 성공 사례가 먼저 하나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 국방반도체 사업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찌 됐든 성공 사례가 한 번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로 또 선순환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의 무기체계 하면 요즘은 전부 다 AI 기반의 유무인 무기체계를 이야기하는데 국방반도체가 지금 핵심 분야여서 상임위에서도 관련된 법을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K-방산 호황인데 여러분들 말씀 들으니까 위기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98.9%의 해외 의존 그리고 주로 미국에 의존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 국제정세가 너무도 불안하니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안심할 수 없고 위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석유, 가스, 천연자원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언제든지 반도체의 주요 소부장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창문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미국이 국방반도체 수입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우리 K-방산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일단 지금 수출하는 무기체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특히 중동 유도무기, 천궁 같은 유도무기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반도체의 또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의존도가 높고 지금은 천궁도 국산 화율이 96% 되고 나머지 4% 안에 방산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의 의존이지만 천궁-II 수출 시에 국방반도체 판매 국가, 이 경우에는 미국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E/L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고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고 글로벌 공급망 수급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이러다가 K-방산의 호황 속 어느 지점에서 또 다른 외세의 변수로 인해 가지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천궁-II뿐만 아니라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KF-21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도경 본부장님께서 그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LIG넥스원에서,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아까 자료집에 보니까 105mm 차륜형 자주포 사격 지휘체계라든지, 아니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발 사업에서 사실은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2년까지 납기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LIG넥스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습니까, 당시에?

○**진술인 김도경** 수정 계약했습니다.

○**백선희 위원** 수정 제안해서 사실은 좀 늦게 납기해도 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진술인 김도경** 예, 면책 정도의……

○**백선희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체상금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이로 인해서 전력 공백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윤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내 우수한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내 우수한 제품을 방산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 문제도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방이나 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국방 분야의 폐쇄적인 산업구조가 이런 국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됐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 어윤성** 사실 저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성하고 이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체계업체 위주로 모듈업체가 있고 그 밑에 부품을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개발환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RF, 프로세서 다 다릅니다. FPG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종속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별로 안 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안 쓰는 이유들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타개해 주고…… 법까지는 아니고요. 실행에서 튜닝을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있는 게 AESA 레이더에 들어가는 밴드의 칩들은 유도무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다양한 데 들어갑니다. 이게 공통성, 범용성이 있습니다. 그걸 전략

을 세워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 캐파가 커지고 좋을 수 있다 그 말씀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백선희 위원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 일부 군용으로든 사용될 수 있고 다른 분야에도, 민간 부분에도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어윤성 예.

○백선희 위원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사용하는 어떤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범용성, 민간 부분에도 사용하지만 이것을 빠르게 군용으로든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국방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미국은 완제품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국방반도체를 넘어서서 사실은 국방 소부장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특수 패키징 원료, 웨이퍼나 가스 등의 수출입 통제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산 핵심 공급망 문제까지 확산시켜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산 관련해서 핵심 부품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100% 잡고 공급망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고 중요한 분야,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같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공급망이나 그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김도경 전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장시간 되다 보니까 실패 시에 지체상황이라든가 정부 과제 참여제한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방사청법을 바꿔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는 다 봐주도록 돼 있어요. 특별법에 그게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방사청, 돼 있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은 돼 있는데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 심의 시에…… 공개입찰경쟁을 하잖아요. 최저가 입찰을 한 기업 쪽에 그제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법안으로 이걸 보장받게 해 주다 보니까 실력이 안 되면서도 최저가를 써 가지고 일단 낙찰을 받고 보자 그리고 뭉개고 있다가 사업 실패다 해 가지고 안 물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방사청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최저입찰제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적정가 입찰로 해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기업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임병옥 대표이사님, 질산갈륨하고 질산비소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술인 임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질산갈륨은 쪽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질산비소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좀 덜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이 2개가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질산비소가 사용되어지는 분야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진술인 임병옥 우선은 질산비소랑 질산…… 나이트라이드(nitride)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나 아까 FPGA 같은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로 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파워라든가, 저잡음 그리고 레이더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반도체는 이렇게 질산비소, 갈륨아사나이드(GaAs), 갈륨나이트라이드(GaN) 이 두 가지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분야만 물어본 거예요. 아까 설명을……

○진술인 임병옥 2개의 특징을 보면 갈륨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높아서 멀리 볼 수 있고요. 갈륨아사나이드 같은 경우는 수신 잡음지수가 좋아서 감도가 좋아집니다.

○임종득 위원 같은 분야에서 사용을 다 할 수 있냐?

○진술인 임병옥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어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주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국방반도체가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이 작은 것 같은데 은근히 규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 시장이 엄청나게 넓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첨단 무기체계로 가면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진술인 어윤성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쪽 열릴 것이라라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게 봤으니까 칩스 앤드 사이언스 액트(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유럽도 칩스 액트(Chips Act)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술인 어윤성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또 우리도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게 K-칩스입니다, 사실은. 케이 칩스 액트(K-Chips Act)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늦지 않게 출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을 디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담기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사청에 제가 묻고 싶은데 이 특별법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돼 있지요?

○방위사업청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장 노용준 예.

○임종득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홍석준 전무님은 방사청을 이야기 하셨던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국방부를 생각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전담기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관계되는 부처를 통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방부, 방사청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과기정통부도 들어가야 되고 기재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리실도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보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지 않으면 케이 칩스 액트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홍석준 전무님, 방산물자 지정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또 안정적인 소요를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데 성공할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분만 더 쓸게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임병옥 대표님 같은 경우 그런데 예산의 확보를 장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방사청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 법안에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규모 다품종이 들어가고 이게 도전적인 사업이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야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차원에서도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방사청의 윤 국장님, 임종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 그것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저희가 예산 지원, 보조금 형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위원장 성일종 지금 제가 그것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잖아요. 뒤에서 머리를 잘, 미리미리 구상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 당국…… 이제 예산 당국하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예.

○위원장 성일종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많잖아요, 지금.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뽑고 법안 통과되기 전부터 예산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그게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박선원 위원님 하시고 한기호 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매우 중요한 공청회인데 초반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잠깐 이석했다가 다시 와서, 미안합니다.

이 법의 기대효과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8.9%의 해외 의존도인데 그중에서 특정 국가라고 하면 크게 미국하고 중국 또는 중국하고 그 외 유사입장국 2개로 나뉘어서 대별을 하면 몇 % 대 몇 % 정도 되나요? 어느 분이냐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교수님.

○진술인 어윤성 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비교를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거의 대부분 미국 겁니다.

○박선원 위원 98.9%에서 중국 것 빼면 대부분 미국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어윤성 예, 중국 것은 생각보다 방산 쪽에서 많이 안 쓰시는 것……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한미 간에 이런 방산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수급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지금 반도체, 특히 국방반도체가 이번에 전쟁에서도 봤지만 기술 진보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것을 실제 무기로 적용하는 건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체 역량을 차분하게 잘 키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출자라든지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빨리, 캐치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잡기의 전략은 채택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그걸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한화시스템이나 LIG에서?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해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 내로 98.9%의 의존도를 60%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질화갈륨 등 화합물 반도체 정도는 확실하게 국내 자립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특별법을 하면…… 없으면 10년 걸리는데 이 특별법으로 하면 5년이 걸린다든지, 5년이 걸리는 것을 더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라도 해서 디에스전자를 도와줘야 된다는지, 아예 지분을……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있는데 이런 데도 17.8%를 KDB산업은행에서 지분 출자했어요. 물론 잘되면 돌려받는 조건부 출자인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지분 출자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실질적인 계획하에서 이게 진행되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보텀업으로 국방반도체 사업을 하는 몇 군데 핵심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이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앞으로 국방산업, 특히 반도체가 연결된 첨단무기 개발 분야에서 국방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적어도 몇 년도까지 어느 분야, 질화갈륨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분야까지는 확실하게 따라붙어야 되겠다. 나머지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아예 이것은 그냥 외주 주고 사 와서 우리가 하자든지, 중국이 아니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성을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법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면 몇 퍼센트 자립도가 되고 어느 분야에 핵심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내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더 집중적으로 키울 거냐 하는 그런 그림,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어윤성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R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 Fab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히 할 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가격도 마음대로 조절하고요. 물량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

이나 그런 것을 맺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RF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산화를 최대한 해서 그리고 얻을 게 많습니다. RF 쪽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서나 다른 전원 같은…… 어떤 분야는 민간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입시키는 쪽에 또 집중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전략적으로 보안, 뇌가 되는 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 데는 거기대로 전략을 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당 법안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에 실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잘 혜택을 봐서 좀 더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임병옥 대표이사께서 보시기에 사실 이게 기회이면서 불안불안하고 겁나는 것도 있지요?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실제 큰 돈은 LIG나 한화로 다 가버리고 우리한테는 조금 오고 그래서 LIG하고 한화는 제대로 시작도 못 했는데 우리만 공동 참여해 가지고 기술 다 뺏기고 이런 두려움도 있지요? 없어요?

○진술인 임병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쪽에 또 챌린지, 도전도 있잖아요.

○진술인 임병옥 솔직히 제가 연구소도 다녀 보고 대기업도 다녀 보고 중소기업 창업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곳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잘 적용이 되고 생태계가 잘 활성화만 된다면 저희는 그런 걱정보다는 빠르게 국방반도체를 국산화하는 데 초점을 갖고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9초박에 안 남았으니까, 방사청에서도 이 법안이 되면 제대로 관리할 자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무기체계 대충해 갖고 본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법까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제대로 이끌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어떤 기술장벽을 넘고 그다음에 국방반도체 핵심 분야는 적어도 이것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있어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방사청 기술국장입니다.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이 있었지만 어떤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진흥하는 법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법에 담기지 못했지만 저희가 매년 법과 별도로 시행계획 등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어쨌든 지금 반도체 이름이 들어간 과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법이 통과 되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뒷받침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좋은 법인데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분야로 해서 다 이렇게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할 자신 있어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함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그만한 분야는 당분간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제가 시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박선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성일종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나가서 실제로 대기업에 반도체 일을 하셨던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뭘 물어봤느냐, ‘능력이 있냐. 진짜 우리가 이 임무를 줬을 때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하겠느냐, ‘수익이 남아야 한다. 돈 안 남는데 안 한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이 남는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남겠느냐’ 하니까 ‘안 남는다. 그래서 안 한다’. 간단해요, 대답이.

그러면 국가가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책이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범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일부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휴머노이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범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에서는 수익이 보장되느냐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LIG넥스원이나 한화나 여기서는 이것 안 만들지요? 이 반도체는 만들지는 않지요?

○진술인 홍석준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 그래서 만드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수익이 남느냐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범용이나 많이 팔아야 되는데 수출은 또 가능하냐고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수출길도 하다 보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기업이 얘기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돈만 남으면 기업이 달려든다, 이 얘기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돈 남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범용으로 쓰는 것을 조금만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적용하면 그러면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다,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선 이 분야의 법은 지금 우리가 만든다고 하고 어떻게 착수해서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을 시작을 빨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어윤성**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아마 통화하신 분이 어떤 특정 분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충분히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약간 결이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보셔 가지고 육성·지원을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국산화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저는 1분 30초를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를 만들 때 과학기술부도 들어와 있고 전략물자 때문에 산업부도 들어와 있는데 예산처가 빠져 있습니다. 예산처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안소위 할 때 예산처를 추가해 주심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 국장님하고 윤 국장님,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우선순위를 이렇게 기업들하고 다 협의하셔서 법안 통과를 대비해서 이러이런 것들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뽑아 놓으셨나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지금 뽑아 놓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물 반도체가 AESA 레이더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합물 반도체는 우주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우주 쪽을 하려고 하면 화합물 반도체에……

○**위원장 성일종** 그것 1번으로 하시고 또 2번으로 3번으로 4번으로 이렇게 조금 하셨어요?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아직 구상…… 초기 기획 단계이기는 한데 국방부와는 아직 공유는 안 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개발할 과제 기준으로는 현재 4개 정도는 개발을 작년부터 착수를 했고 현재 내년에 착수하려고 먼저 식별해 놓은 과제는 9개 정도는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범용성을 기준으로 뽑아 놓은 개발 과제는 있고 향후 늘려 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범용성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범용성이 없는 것도 있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 같은 데 선진국에서 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두 진영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 둘다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한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내놨었을 때 대체성에서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검토하셨어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그런 부분도 검토 대상에 있는데 지금 아직

뽑아 낸 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여기 홍석준 전무님을 비롯해서 또 LIG 김도경 전무님 나오고 이러셨으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하면 늦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R&D 예산을 일부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내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예산이라고 하는 게 8월이면 시트가 마감이 되는데 그때 가면 늦어요. 이게 4월, 5월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무진의 국장님들이 좀 뛰어 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박선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더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할 때 임병옥 대표님 같은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예요, 아니면 체계업체로 가서 주려고 하는 구조예요,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체계업체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박선원 위원님이 체계업체에, 힘이 세니까 연구비 받아 가지고 100이면 100을 다 주겠느냐 아니면 80 줄 건지 50 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아까 웃어 가면서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 부분도 오늘 공청회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국회의 기록에 역사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계업체가 아닌 팹리스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할 만큼 주어야 이 산업이 빨리 육성될 것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실무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미리 전문가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박선원 위원 방사청한테 질문 하나, 끝으로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해요.

노파심에서 질문 드리는데요. 방위사업청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특별법하고 업무 범위, 직무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사전에 선도 연구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다 방사청에서 할 수가 있어요, ADD까지 포함해서. 다만 이것은 특정 산업 분야, 비록 좁기는 하지만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부터 방사청이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사업청법에 부여된 방사청의 임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에서, 행안위나 다른 법에서 국가정보원은 이러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국가정보원 직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거면 이것은 국가정보원법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 육성 관련 법

를안인데 국방반도체를 육성하는 것이 방사청의 업무, 물론 지원하고 연구개발하고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는 충돌은 없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방위사업청의 주요 업무가 방위력 개선사업, 획득 업무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방산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스타트업, 강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법에도 있고 지금 별도로 많은 예산 또 사업이 있어서……

○박선원 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방반도체 육성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님 또 방사청의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대식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유용원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 희

○출장 위원(1인)

강선영

○청가 위원(2인)

김민석 김병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보 원종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국방정책실장 김홍철

인사복지실장 김성준
기획관리관 오성식
국방개혁기획관 차원준
정책기획관 우경석
국제정책관 이광석
인사기획관직무대리 김신애
예비전력정책관직무대리 김기영
보건복지관 성기욱
군사시설국장 천승현
군수관리국장 이갑수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법무관리관직무대리 이정민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김미성
국방보좌관직무대리 박동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김주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
주한캐나다대사관
대사 필립 라포르툰

○출석 진술인

김도경(LIG넥스원(주) 연구개발본부장)
어윤성(광운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수)
임병옥(주)디에스전자 대표이사)
홍석준(한화시스템(주) 전무)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3)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3.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4)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3)

이상 6건 3월 17일 회부됨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1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7)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

(2026. 3. 20. 윤종오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 2217657)

3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3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청원

(2026. 3. 20. 백미순으로부터 이재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6)

3월 23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6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제출

(2026. 3. 23. 국방부장관 제출)